

4. 금융투자협회 규정

- 가. 금융투자회사의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 (코스닥150위클리옵션에 대한 경고·보류기준 설정)
- 나. 장내파생상품 거래설명서 (FICC 파생상품시장 개장시간 15분 조기화 등)
- 다. 집합투자증권 핵심요약 상품설명서 (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가입관련 우선 안내사항 추가)

4. 금융투자협회 규정*

가. 금융투자회사의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 (2025/10/1 개정 · 2025/10/27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☐ 코스닥150위클리옵션 신규 상장(한국거래소 2025.10.27.)을 반영하여 주문착오방지 관련 경고·보류기준을 개정하기 위함
 - 한국거래소 '2025년 파생상품시장 제도개선사항' 중 신규 상장 상품(주식선물·옵션, ETF선물, 섹터지수선물 추가 상장 상품의 경우 기존 경고·보류기준 적용)
 - 매매주문 시 착오입력을 방지하기 위해 금액, 수량, 가격 등 특정 기준 초과시 팝업창을 통한 재확인(경고기준) 또는 책임자 승인(보류기준)을 거쳐 최종 주문 처리

2) 주요 내용

- ☐ 코스닥150위클리옵션에 대한 경고·보류기준 설정(별표 1)
 - KOSDAQ150옵션과 동일하게 주문금액 기준으로 경고기준(5억원 초과~10억원 이하), 보류기준(10억원 초과) 설정
 - 코스닥150 위클리옵션의 거래제도가 KOSDAQ150옵션 유사(거래승수, 행사가격 설정, 호가가격단위 등 동일)
- ☐ 유로스톡스50선물에 대한 경고·보류기준 삭제(별표 1)
 - 한국거래소 파생상품 야간거래 제도 도입에 따라 글로벌거래 종료(2025.6.9.)
 - 주문수량 또는 주문가격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상품 범위 명확화

*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투자협회 규정 및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

나. 장내파생상품 거래설명서 (2025/10/20 개정 · 2025/10/27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한국거래소(KRX)의 「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」 개정(‘25.10.1.)으로 FICC 파생시장의 개장 시간 등이 변경되어 개정 사항을 설명서에 반영

2) 주요 내용

- FICC 파생상품시장 개장시간 조기화
 - 돈육선물 시장 및 돈육선물스프레드 시장을 제외한 FICC 파생시장 개장시각 15분 조기화
 - 금리상품시장, 통화상품시장, 금선물시장 등
 - (기존) 09:00~15:45 → (개정) 08:45~15:45, 주식 파생시장과 동일
- 코스닥150위클리옵션 상장
 - 투자자들의 다양한 헤지수요 및 정밀한 위험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코스닥150위클리옵션 상장

다. 집합투자증권 핵심요약 상품설명서 (2025/10/1 개정 · 시행)²⁾

1) 개정 이유

- 금융위 ‘고난도 금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(2025.2.26)’ 및 본회 표준투자권유준칙 개정(2025.9.11. 개정) 사항을 집합투자증권 핵심요약설명서에 반영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-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가입관련 우선 안내사항 추가
 - 고객에게 제공되는 설명서의 상품명 앞에 ‘고난도 금융투자상품’ 문구를 추가하여 눈에 띄 수 있도록 표시
 - 설명서 상단에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부적합 투자자, 손실 발생가능성 및 손실사례 등을 우선 배치
 - 투자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예시안의 형식, 구조, 색상, 글꼴 등을 참고

2) 표준투자권유준칙 개정(2025.9.11. 개정) 시행일과 동일하게 적용

3) 관련 상품설명서

☐ 파생결합증권 핵심요약 상품설명서 (2025/10/1 개정 · 시행)

선임연구원 신경희(02-3771-0854, skh0828@kcmi.re.kr)